

# 화강권역 하천기본계획수립 전략 환경영향평가

(평가항목·범위 등의 결정내용)

2021. 7.



국 토 교 통 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 제1장 계획의 목적 및 개요

## 1.1 계획의 배경 및 목적

- 화강권역은 하천기본계획 수립 후 수년이 경과하고 하천간 기본계획 수립시기가 상이하여 권역 내 일관성 있는 수문·수리량의 검토가 필요하며, 하천개수사업 및 도시화, 기상변화 등으로 인한 하도 및 수문·수리특성 변화를 고려하는 등 하천의 관리운영상 미비점의 보완이 시급한 당면과제로 부각됨.
- 따라서, 「하천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규정에 의거 유역의 강우, 하천의 유량, 수질 및 생태, 하천의 이용현황 등 하천의 치수, 이수, 환경에 관한 제반 사항을 조사·분석하여 하천의 종합정비 및 이용, 자연친화적인 하천관리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작성하여 하천의 효율적인 이용과 보전, 하천의 유지관리 등 수자원 종합 개발지침 확립에 기여하고자 함.

## 1.2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근거

### 1.2.1 실시근거

#### 가. 하천기본계획 실시근거

- 본 하천기본계획에 대한 법적 근거는 「하천법」 제25조에 따라 계획을 수립함.

#### 〈표 1.2.1-1〉 하천기본계획 실시근거

##### 제25조 (하천기본계획)

- ① 하천관리청은 그가 관리하는 하천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의 이용 및 자연친화적 관리·보전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 등을 내용으로 하는 10년 단위의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하천유역 수자원관리계획 등과의 연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하천관리청인 하천에 대하여 하천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관계 하천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 ③ 하천관리청은 하천기본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5년마다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계획을 변경하여야 한다.
- ④ 하천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⑤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하천관리청은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수자원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⑥ 제9조는 2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지방하천에 대하여 시·도지사가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 ⑦ 제7조제6항은 하천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하여 준용한다.
- ⑧ 하천기본계획의 수립 기준·절차·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나.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근거

-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항 관련 [별표2]의 “2. 개발기본계획”의 “자. 하천의 이용 및 개발” 중 3)항에 해당되어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대상에 해당됨.

〈표 1.2.1-2〉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근거

구 분	개발기본계획의 종류	협의 요청시기
자. 하천의 이용 및 개발	3) 「하천법」 제25조에 따른 하천기본계획	「하천법」 제25조제5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관리청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그림 1.2.1-1〉 전략환경영향평가 절차도

구 분	관련 내용	관련법령
개발기본계획 입안	○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기관	법 제9조
평가항목·범위 등의 결정 [전략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운영(평가준비서)]	○ 협의회 심의 - 목적 : 대안의 종류, 세부 검토항목의 종류 선정(스코핑) - 기간 : <b>30일 이내</b> (공휴일 제외) - 방법 : 협의회 개최( <b>서면심의 가능</b> ) - 구성 : 주민대표·시민단체 등 민간전문가 참여	법 제11조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	○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을 결정된 날부터 20일 이내 - 행정기관의 정보통신망 및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 - <b>14일 이상</b>	법 제11조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 주민의견 제출시 포함하여 작성	법 제12조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관계 행정기관	○ 관계행정기관 의견 수렴( <b>30일 이내</b> ) - 환경부장관 및 승인기관의 장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 주민 의견 수렴 - 주민공람 및 주민설명회 • 공람기간 : 20~40일 이내 • 공람공고 : 초안제출 10일 이내 신문 공고(전국, 지방) • 주민설명회 개최 : 공람기간 내(개최하기 7일전 공고) * 다른 법령에 따른 의견수렴절차에서 수렴한 경우 생략가능 - 주민의견 제출 • 공람종료 후 7일 이내 - 공청회 개최 요건 • 30명 이상, 5명 이상이고 의견제출 주민 총수의 50% 이상	법 제13조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 공개	○ 개발기본계획 확정 이전에 행정기관의 정보통신망,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에 게시( <b>14일 이상</b> )	법 제13조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본안	○ 의견수렴 결과 포함(타당한 의견 반영)	법 제16조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 협의기관 : 환경부(유역환경청)	법 제17조
협의내용 통보	○ 협의기간 : <b>30일 이내</b> (10일 연장 가능, 공휴일 제외)	법 제18조
협의내용 반영결과 통보	○ 계획의 확정된 날부터 <b>30일 이내</b> 통보	법 제19조

### 1.3 추진경위 및 계획

#### 1.3.1 계획의 추진경위

- 2019. 11. : 화강권역 하천기본계획수립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착수
- 2020. 03. : 현장 조사
- 2021. 05. : 하천수질 및 저질 조사구역 및 하천현황 조사
- 2019. 05. : 생태계 조사
- 2020. 05. : 전략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 구성

#### 1.3.2 계획의 추진계획

- 2021. 06. :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
- 2021. 06. : 결정내용 공개(결정 후 20일 이내 14일 이상 공개)
- 2021. 07. : 화강권역 하천기본계획수립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작성 및 제출

### 1.4 계획의 내용

- 계획명 : 화강권역 하천기본계획수립 전략환경영향평가
- 위치 : 화강(지방하천), 사곡천(지방하천), 와수천(지방하천)
  - 강원도 철원군 김화읍 한탄강 합류점 ~ 강원도 철원군 서면 화강 합류점
- 규모 : L=52.10km
- 계획시행자 :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 승인기관 :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 협의기관 : 원주지방환경청

〈표 1.4-1〉 계획하천의 범위

구분	하천명	등급	위 치		과업연장 (km)
			기 점	종 점	
1	화 강	지방	강원도 철원군 근동면 휴전선	강원도 철원군 김화읍 한탄강(지방) 합류점	20.60
2	사곡천	"	강원도 철원군 근남면 잠곡리	강원도 철원군 김화읍 화강(지방) 합류점	14.00
3	와수천	"	강원도 철원군 서면 자등리	강원도 철원군 서면 화강(지방) 합류점	17.50



- 유역의 발원지는 이북에 있으며, 북한측의 철원군 근동면 말굴고개에서 발원하여 남류하다가 남서방향으로 전향하여 철원군 김화읍 암정리에서 마현천과 합류한 다음 근남면 사곡리에서 사곡천과 합류후 재차 서면 와수리에서 와수천과 합류하여 서측으로 유하하며, 지경리 부근에서 불당천과 합류하여 다시 북측으로 5km 유하하여 한탄강으로 유입됨.
- 유역의 형상은 본류가 서측으로 치우쳐 있는 마름모꼴을 이루고 있으며, 지형은 이북측 상류부의 EL.470~1,000m의 준봉으로 연립하고 있는 험준한 산지를 관류하고, 중·하류부는 EL.500~1,100m의 높은 봉우리로 이루어져 있지만, 유로의 형성이 비교적 유역 중심부로 완만한 저지대 평야지 이므로 하천변을 따라서 다소 넓은 농경지를 형성하고 있음
- 하상경사는 약 1/50~1/800으로 상류부에서 급한 경사를 이루고 있으며, 중·하류부에서 비교적 완만한 경사로 구성되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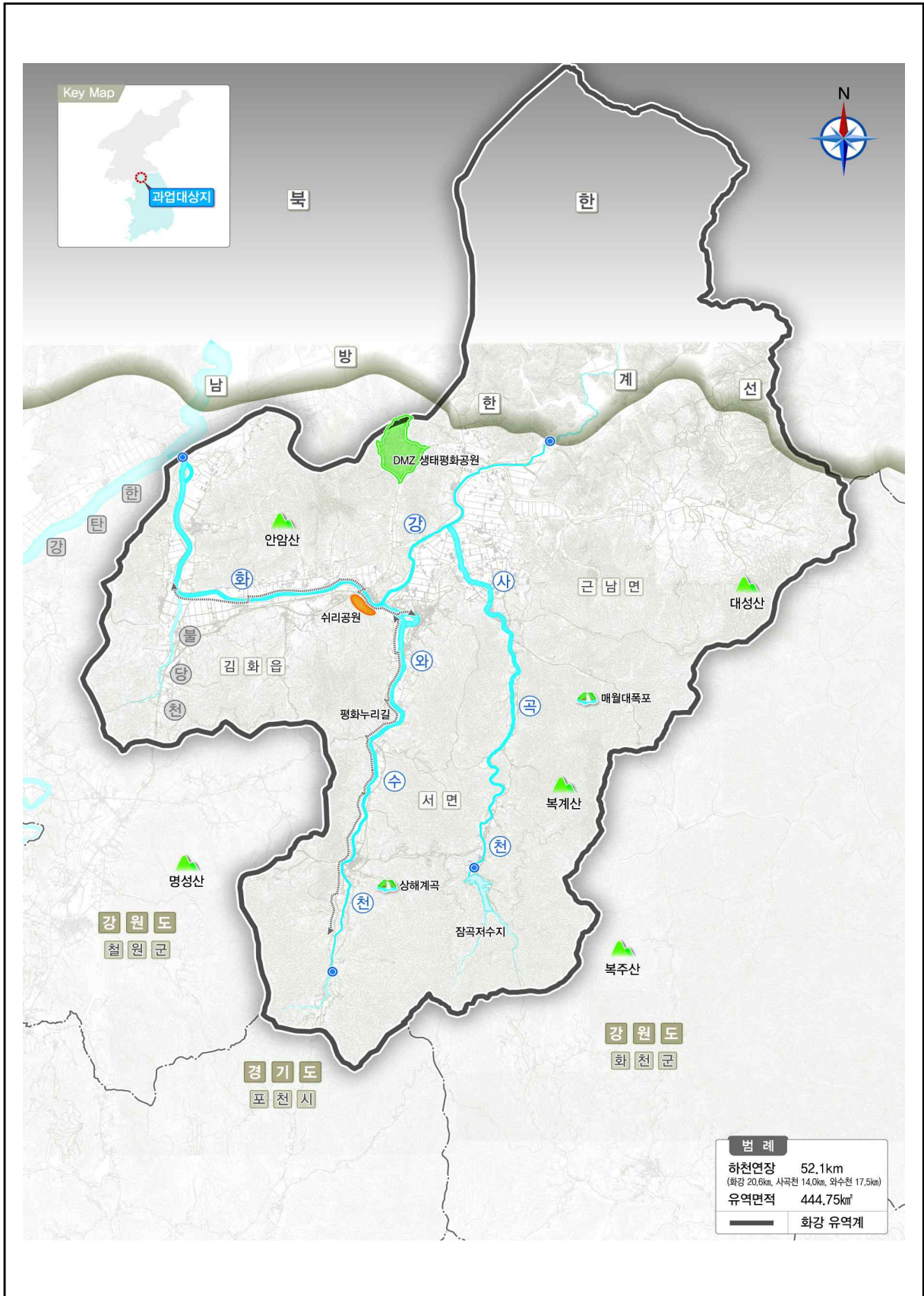
#### ○ 사곡천

- 사곡천은 한강의 제4지류로서 유로연장 20.80km, 유역면적 72.86km<sup>2</sup>이며, 북위 38° 06′ ~ 38° 16′, 동경 127° 26′ ~ 127° 32′ 에 위치하고 있으며, 철원군 근남면 잠곡리 잠곡저수지에서 발원하여 사행을 하면서 북측으로 유하하다가 화강 좌안으로 유입되고 있음.
- 본 유역의 중·상류부는 높은 산맥으로 되어있어 지세가 험준한 편이고, 하류부는 농경지가 매우 발달한 평야지로 형성되어 있음.
- 하상경사는 1/73 ~ 1/108로 급경사 지형을 가지고 있으며, 화강으로 합류되는 하류부에 농경지가 분포하고 있다.

#### ○ 와수천

- 와수천은 한강의 제4지류로서 유로연장 18.66km, 유역면적 68.76km<sup>2</sup>이며, 북위 38° 06′ ~ 38° 25′, 동경 127° 22′ ~ 127° 28′ 사이에 위치하고 있음.
- 철원군 서면 자등리에서 발원하여 계속 북측으로 유하하면서 좌, 우측으로 소하천들을 유입시키고 서면 와수리의 김화고등학교를 지나 서측으로 유하하면서 본류인 화강으로 유입됨.
- 유역의 형상은 수지상으로 동쪽으로는 철원군 근남면, 서쪽으로는 갈말읍, 남쪽으로는 포천군 이동면과 화천군 사내면 일부와 북쪽으로는 김화읍에 접하고 있으며, 유역 경계로 능선을 따라 동측 신술현, 상해봉 등 크고 작은 산정을 분수계로 하여 경계를 이루고 있음.

(그림 1-1) 위치도



# 제2장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

## 2.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설정

- 본 계획의 시행으로 인한 환경영향을 정량적 및 정성적으로 예측하기 위하여 계획하천 및 주변지역의 자연환경의 보전, 생활환경의 안전성, 사회·경제환경과의 조화성 등 환경영향에 미치는 영향을 등을 고려하여 대상지역 범위를 설정하였음.

[표 2.1-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설정

대상지역	시간적 범위
강원도 철원군	공사시 및 운영시

## 2.2 항목별 대상지역 설정

- 검토대상지역의 범위는 사업계획의 성격, 특성 등을 토대로 직접영향권과 간접영향권으로 구분하였으며, 직접영향권은 계획하천 구간 편입에 따라 영향이 예상되는 지역으로 설정하였고, 간접영향권은 계획하천 주변지역 생활권으로 설정하여 입지적 범위로 설정함.
- 공사시 하천내 부지 편입에 따른 토지이용 변화, 토사유출에 의한 수질오염, 장비가동 등에 의한 비산먼지·소음 발생, 공사시 폐기물 발생 등이 예상되므로 환경영향이 예상되는 주요 항목별 계획특성을 감안하여 대상지역을 설정하였음.
- 계획의 성격, 특성 등을 토대로 주요 검토항목과 검토대상지역을 설정하였음.
- 본 계획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은 “제5장 평가항목 및 범위 등의 설정”에서 추출한 환경영향요소 및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환경부 고시 제 2020-289호」 제23조제2항에 의거하여 설정하였으며, 각 평가항목에 대한 대상지역을 아래 표와 같이 설정함.
- 본 계획의 시행으로 인한 환경영향을 정량적 및 정성적으로 예측하기 위해 계획하천 및 주변지역의 자연환경의 보전, 생활환경의 안전성, 사회·경제환경과의 조화성 등을 고려하여 환경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의 설정은 「전략환경영향평가 업무 매뉴얼, 2017. 12, 환경부」, 「환경영향평가 평가범위 설정 가이드라인(대기질, 악취, 소음·진동), 2013, 환경부」등을 참조하여 평가대상지역을 선정하였음.



〈표 2.2-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주요 평가내용

평가 대상지역	주요 평가내용
직접영향권 (계획하천 및 편입구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하천 정비에 따른 지형변화 및 토사, 비탈면 발생</li> <li>○ 하천구간 편입에 따른 토지이용 변화</li> <li>○ 공사장비 투입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및 폐유발생</li> <li>○ 토사유출 및 부유물질 농도 증가에 따른 수질오염</li> <li>○ 하천구간 공사에 따른 육수 생물상의 변화</li> </ul>
간접영향권 (계획하천 주변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사시 사업시행에 따른 주변 정온시설 및 생태계에 미치는 대기질, 소음·진동 및 동·식물상 등의 영향</li> </ul>

〈표 2.2-2〉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별 대상지역 설정

평가항목		평가사항	대상지역 범위	
계획의 적정성	상위 및 관련계획과의 연계성	○ 상위계획과의 연계성 검토	○ 계획하천	
	대안 설정·분석의 적정성	○ 대안 비교를 통한 적정성 검토	○ 계획하천	
입지의 타당성	<input type="checkbox"/> 자연환경의 보전			
	생물다양성· 서식지 보전	동·식물상	○ 육상·육수동물상에 미치는 영향	○ 계획하천 및 주변지역
		자연환경 자산	○ 하천 정비시 주변 자연환경자산 에 미치는 영향	○ 계획하천 및 주변지역
	지형 및 생태축 보전	지형·지질	○ 하천 정비시 하천지형 변화영향	○ 계획하천
	주변경관에 미치는 영향	경 관	○ 하천 정비시 주변 지역의 미치 는 경관 변화	○ 계획하천 및 주변지역
	수환경의 보전	수 질	○ 하천 정비로 인한 계획하천의 부유토사 증가에 의한 영향	○ 계획하천 및 주변 수계
		수리·수문	○ 하천 정비시 홍수량 및 홍수위 변화 등 수리·수문변화 및 영향	○ 계획하천 및 주변 수계
	<input type="checkbox"/> 생활환경의 안정성			
	환경기준의 부합성	기 상	○ 계획 하천 인근 기상자료 분석, 대기질 항목의 분석 기초자료	○ 계획하천 및 주변지역
		대기질	○ 하천 정비시 주변 지역의 대기 질 영향	○ 계획하천 및 주변 정온 지역
		소음·진동	○ 하천 정비시 주변 지역의 소음· 진동 영향	○ 계획하천 및 주변 정온 지역
		토 양	○ 하천 정비시 토양오염 영향	○ 계획하천
자원·에너지 순환의 적정성	친환경적 자원순환	○ 하천 정비시 건설폐기물, 생활 폐기물 등 발생 및 처리방안	○ 계획하천 및 주변지역	
<input type="checkbox"/> 사회·경제환경과의 조화성				
환경친화적 토지이용	토지이용	○ 계획 하천의 토지이용 변화	○ 계획하천	

## 2.3 평가항목의 설정

○ 평가항목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별표 1]의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과 「전략환경영향평가 업무 매뉴얼, 2017. 12」을 참고하고, 계획의 특성, 인근지역의 환경특성 등을 고려하여 계획시행에 따라 영향이 예상되는 항목을 선정하였음..

〈표 2.3-1〉 평가항목의 설정

평가항목		설정사유	
1. 개발기본 계획의 적정성	가. 상위계획 및 관련 계획과의 연계성	○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 등과 본 계획의 연계가 적정한지 검토 필요	
	나. 대안 설정·분석의 적정성	○ 계획 수립 및 미수립, 행정목적 달성을 위한 방안에 따른 대안 평가의 적정성 검토 필요	
2. 입지의 타당성	가. 자연환경의 보전	생물다양성·서식지 보전	○ 보호지역, 법정보호종 출현여부 등 조사 필요
		지형 및 생태축의 보전	○ 계획수립에 따른 지형 및 생태축 훼손에 대한 검토 필요 ○ 계획수립에 따른 주요 산림축(백두대간, 주요 정맥·지맥 등) 훼손에 대한 검토 필요 ○ 학술적·문화적 또는 자연환경보전 가치가 있는 지역에 대한 조사 필요
		주변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	○ 수려한 경관, 특색 있는 자연경관 지역, 경관관련 보전 용도지역에 대한 검토 필요 ○ 자연경관심의 대상여부 검토 필요
		수환경의 보전	○ 각종 수환경 관련 보호지역(상수원보호구역, 특별대책지역, 수변구역 등)에 직·간접으로 영향이 있는지 검토 필요
	나. 생활환경의 안정성	환경기준의 부합성	○ 계획지역 영향범위 내 대기질, 소음·진동, 토양 등의 현황을 조사 및 계획수립에 따른 영향 검토 필요
		자원·에너지 순환의 효율성	○ 계획지역 영향범위 내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등을 조사 및 계획수립에 따른 영향 검토 필요
	다. 사회·경제 환경과의 조화성	환경친화적 토지이용	○ 편입용지 및 토지이용의 환경적 적정성 검토 필요

〈표 2.3-2〉 평가항목의 선정 및 제외 사유

분 야		세부 항목	선정결과	사 유
자연 환경의 보전	생물다양성· 서식지 보전	동·식물상	평가	○ 식물상, 식생 및 동물상의 변화
		자연환경자산	평가	○ 계획하천 및 주변 자연환경자산 현황 파악
	지형 및 생태축 보전	지형·지질	평가	○ 질·성토에 의한 지형 변화 ○ 토사유출, 비탈면 발생 등
		주변자연경관 에 미치는 영향	위 락	제외
	경 관		평가	○ 계획시행으로 인한 경관변화 영향
	수환경의 보전	수질 (지표·저질)	평가	○ 공사시 토사유출로 인하여 수계에 미치는 영향 ○ 공사인부 투입에 의한 오수 발생
		수리·수문	평가	○ 계획시행에 따른 수리·수문 변화파악
		해양환경	제외	○ 계획시행으로 인한 영향 경미
	생활 환경의 안정성	환경기준 부합성	기 상	평가
대기질			평가	○ 공사시 비산먼지 발생 및 공사장비로 인한 오염물질 발생
악 취			제외	○ 본 계획으로 인한 악취영향 없음
토 양			평가	○ 공사시 토양에 미치는 영향
소음·진동			평가	○ 공사장비 가동에 의한 소음·진동 발생
위생공중보건			제외	○ 계획시행과 연관 없음
전파장해			제외	○ 계획시행과 연관 없음
일조장해			제외	○ 계획시행과 연관 없음
환경기초시설의 적정성			제외	○ 환경기초시설과의 연계성 미미
자원·에너지 순환의 효율성		온실가스	제외	○ 본 계획으로 인한 온실가스 영향 미미
	친환경적 자원순환	평가	○ 공사시 지장물 철거, 수목 훼손, 공사인부에 의한 폐기물 등 발생	
사회·경제환경과의 조화성 (환경친화적 토지이용)	토지이용	평가	○ 계획시행 전·후의 토지이용상의 변화	
	인구주거	제외	○ 계획시행으로 인한 인구·주거 변화 없음	
	산업	제외	○ 계획시행과 연관 없음	

## 2.4 평가범위 및 방법 설정

- 본 계획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범위는 「환경영향평가 평가범위 설정 가이드라인, 환경부·국토환경평가과, 2013」 및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환경부 고시 제2020-289호」에 의거하여 설정하였음.
- 본 계획의 시행으로 인해 영향이 예상되는 주변 정온시설 등에 대하여 영향예측을 수행하여 예측결과에 따라 적절한 환경보전방안을 수립할 계획임.

〈표 2.4-1〉 평가범위 및 방법 설정

평가항목		평가범위 및 방법 선정		검토내용
		지역(범위)	방법	
자연환경의보전	동·식물상	○ 계획하천 ○ 주변지역	○ 문헌조사 ○ 사업계획 분석	○ 식물상 및 식생현황, 육상·육수동물상 현황 파악 및 변화 예측
	자연환경자산	○ 계획하천 ○ 주변지역	○ 현지 및 문헌조사 ○ 사업계획 분석	○ 자연환경자산 현황 파악 및 미치는 영향 분석
	지형·지질	○ 계획하천	○ 현지 및 문헌조사 ○ 공사계획평면도	○ 지형·지질 현황 파악 ○ 계획시행으로 인한 지형의 변화, 사면 안정성 등 예측
	경관	○ 계획하천	○ 현지 및 문헌조사 ○ 경관변화 예측	○ 계획시행으로 인한 경관변화 검토
	수질	○ 계획하천 ○ 하류수계	○ 현지 및 문헌조사 ○ 수리·수문 해석	○ 수질 및 수리·수문 현황 파악 ○ 공사시 토사유출 영향예측 ○ 계획홍수량 등 수리·수문 변화 검토
	수리·수문			
생활환경의안정성	기상	○ 계획하천 ○ 주변지역	○ 인접 기상대 기상자료 분석 ○ 현지 및 문헌조사	○ 기초자료 활용(대기질 항목) ○ 공사시 공사장비 및 토공작업에 의한 영향예측
	대기질			
	토양	○ 계획하천 ○ 주변지역	○ 문헌조사 ○ 토양오염시 처리검토	○ 토양현황 파악, 토양오염시 처리방법 검토
	소음·진동	○ 계획하천 ○ 주변지역	○ 소음·진동 예측식 - 거리감쇠 공식	○ 소음·진동 현황, 발생원 및 공사시 정온시설 영향 범위 예측 ○ 공사시 공사장비 가동에 의한 소음·진동 예측
	친환경적자원순환	○ 계획하천 ○ 주변지역	○ 문헌조사 ○ 원단위 이용	○ 폐기물의 발생 및 처리현황 ○ 폐기물처리시설 현황 ○ 공사시 폐기물 발생량 예측
사회·경제환경과의조화성	토지이용	○ 계획하천 ○ 주변지역	○ 현지 및 문헌조사	○ 토지이용 현황 파악
			○ 사업계획 분석	○ 계획시행으로 인한 토지이용 변화 파악

# 제3장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 계획

## 3.1 의견수렴 경위

-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 개발기본계획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함에 있어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한 관계기관, 주민, 관계 전문가, 환경단체, 민간단체 등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들어야 함.

###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주민 등의 의견수렴)

- ①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개발기본계획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공고·공람하고 설명회를 개최하여 해당 평가 대상지역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주민이 공청회의 개최를 요구하면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3조(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공고·공람 등)

- ①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천재지변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법 제12조 제2항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제출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여 발행되는 일반 일간신문(이하 “일간신문”이라 한다)과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여 발행되는 일반일간신문(이하 “지역신문”이라 한다)에 각각 1회 이상 공고하고, 20일 이상 40일 이내의 범위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주민(이하 이 장에서 “주민”이라 한다) 등이 공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휴일 및 토요일은 공람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개발기본계획의 개요
  2.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공람 기간 및 장소
  3.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의견(공청회 개최 여부에 대한 의견을 포함한다)의 제출시기 및 방법
- ②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공고 및 공람을 실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공고 및 공람을 실시한다는 사실 등을 게시하여야 한다.
  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을 관할하는 시·군·구 또는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정보통신망 : 공고 및 공람의 내용과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요약문
  2.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 : 공고 및 공람의 내용과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 ③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공고를 하려면 공람 기간 및 장소 등에 관하여 미리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을 들어 그 내용을 결정하여야 하며, 공람장소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을 관할하는 시·군·구마다 1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 3.2 의견수렴 계획

### 3.2.1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고

- 화장권역 하천기본계획수립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한 주민의견수렴을 위해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초안을 제출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일간신문과 지역신문에 각각 1회 이상 공고할 계획임.

### 3.2.2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홈페이지 및 환경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에 평가서 초안을 공개하여 공람할 수 있도록 함.
- 또한, 사업시행으로 인한 환경영향이 직·간접적으로 예상되는 해당권역의 행정구역에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를 비치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20일~40일 이내 주민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며, 구체적인 공람기간 및 공람장소는 관할 행정기관과 협의하여 추후 결정토록 할 계획임.

〈표 3.2.2-1〉 환경영향평가서(초안)공고·공람 계획(안)

구 분	공람장소(안)	비 고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강원도 철원군	

### 3.2.3 설명회 및 공청회 개최

-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람기간 중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5조 규정에 따라, 주민설명회를 개최 및 장소는 추후 관할 행정기관(철원군)과 협의하여 결정할 계획임.
- ※ 「환경영향평가법」 제14조(주민 등의 의견 수렴 절차의 생략)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다른 법령에 따른 의견 수렴절차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경우에는 제13조(주민 등의 의견수렴)에 따른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음.

<p><b>「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5조 (설명회의 개최)</b></p> <p>①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공람기간 내에 법 제13조제1항 본문에 따른 설명회를 개최하여야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 ~ ~ 중 략 ~ ~ ~</p> <p>③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설명회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설명회를 개최하기 7일 전까지 일간신문과 지역신문에 개발기본계획의 사업개요, 설명회 일시 및 장소 등을 각각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13조제1항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공고사항에 이를 포함하여 공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b>「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6조 (공청회의 개최 등)</b></p> <p>①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3조제1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제14조에 따라 공청회 개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한 주민이 30명 이상인 경우</li> <li>2. 제14조에 따라 공청회 개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한 주민이 5명 이상이고,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한 주민 총수의 50퍼센트 이상인 경우</li> </ol>

### 3.2.4 관계기관 의견수렴

-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한 관계기관의 의견은 관계법령에 따라 협의기관(원주지방환경청), 관할 광역시장·도지사(강원도),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 평가서 초안을 제출하여 의견을 수렴할 것임.

#### 「환경영향평가법」 제12조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작성)

- ②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제출하여 의견을 들어야 한다.
  1. 환경부장관
  2. 승인기관의 장(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계획만 해당한다)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2조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제출방법 등)

- ① 법 제12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라 하며, 협의기관의 장이 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개발기본계획의 수립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이하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이라 한다)을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3.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을 관할하는 시장(특별자치시장을 포함하며,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 3.2.5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공개

- 사업계획 확정 이전에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운영하는 정보통신망 및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에 14일 이상 주민 등의 의견수렴결과 및 반영여부를 게시할 것임.